

문서번호	축산진흥과- 37507	방역팀장	과 장	소 장	부시장	시 장	결 재
보존기간	10년	업윤주	김인혁	이노민	김주영	조현일	
보고일자	2022. 12. 28	총무과장 이영훈 회계과장 애민기 기획예산팀장 김주영 행정지원국장 김주식 인사팀장 강동현 지출팀장 최길선 기획예산팀장 권태선					
공개여부							

-경산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안

- ❖ 채용분야 : 가축방역분야
- ❖ 채용인원 : 1명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주35시간)]
- ❖ 채용기간 : 2023. 3월 부터 2025. 3월까지 2년
(예산범위내, 근무실적에따라 5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 ❖ 자격요건 :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 주요업무 : 가축방역업무 추진 및 지원



경 산 시
[축산진흥과]

신규채용 배경

- ❖ 급증하는 악성가축전염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의 선제적 차단방역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적절한 인원배치
- ❖ 지자체에서 가축방역관 부족현상이 지속되어 현장의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발생시 대응에 어려움 지속

1 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법률 제16884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24853호)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05호)
- 경산시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규칙 제542호)

2 채용개요

- 채용기간 : 2023. 3. ~ 2025. 3. (2년간)
(※예산범위 내,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채용인원 : 1명
- 채용구분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주 35시간)
- 채용방법 : 공개경쟁채용(경력경쟁임용)시험에 따라 선발
(서류심사 및 면접)
- 자격요건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채용필요성

- 고병원성 가축 질병의 반복적 발생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신규 질병 유입에 따른 질병 다양화에 대응할 인원 충원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1항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신고 체계 구축
 2.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
 3.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조사·연구
 7.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
 8. 살처분·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9.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화학적 처리에 직접 관여한 사람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10. 가축전염병 비상대응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
 11.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매몰에 대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매몰 후보지를 미리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시·도 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의 인력·장비·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할 때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 및 세부 방역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안전한 축산물 제공을 위한 가축질병 청정화 중요성 증가

- 재난형 가축질병뿐만 아니라 축산물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수 공통 전염병에 대한 방역대책 지속 추진 필요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충원하고 있으나, 응시율이 저조하고, 이·퇴직으로 상시 결원이 발생

구 분	방역팀 인원	수의직	비 고 (방역업무중 타직렬)
경주시	4	2	2
구미시	4	1	3
김천시	3	-	3
안동시	5	-	5
영천시	3	3	-
포항시	3	1	2
경산시	3	2	1

□ (지자체) 경력소요 업무량을 고려해 산출한 지자체 방역관 적정 인원은 2,018명인데 현원은 1,270명(수의직 881 + 병역대체공방수 389명)으로 748명 부족 (전국적 현상)

※ 수의업무종사자 통계('21): 동물병원(40%), 공무원(12.1%) 기타

타시군 시간선택제 임용현황

구 분	시간선택제 인원	채용시기 및 급수
경기도 파주시	1	'22. 라급 (일반)
경기도 군포시	1	'22. 마급(일반)
경기도 김포시	1	'22. 마급(일반)
충남 아산시	2	'22. 다급(수의사)
		'22. 라급(일반)

4 채용자격기준

- 공통조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 성별·지역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직무분야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임용분야	채용자격 기준
가축방역업무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¹⁾ 민간단체 등에서 축산, 방역 관련 근무경력 ▶ 우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예정 직무과 관련된 축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학과 졸업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운전면허 소지자

5 채용인력 운영계획

- 근무시간 : 월~금, 주5일, 주35시간
(09:00 ~ 18:00(휴식시간 1시간 포함))
- ※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례법령 적용
- 배치부서 :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과 가축방역팀

직위/직급	담당업무
팀 장	동물방역 종합관리 대책 수립 및 추진
수의6급	구제역 방역, 전염병 예방접종 관리, 가축방역 예산편성, 매뉴얼 정비, 공수의 관리, 방역 지원사업
농업8급	양돈, 양계분야 지원사업, 거점소독장 운영
시간선택제 임기제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축산차량등록제
공중방역수의사 (병역대체복무)	결핵, 브루셀라 방역, 살처분 업무 기타 방역업무 보조

○ 주요업무

-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 축산차량등록제
- 기타 방역업무

○ 기대효과

-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파장이 큰 악성가축질병의 사전 차단과 발생시 신속한 처리와 민원 유발없는 행정처리로 “질병없는 청정 경산, 축산농가 보호”에 힘쓰고자 함

< 지방공무원법 >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1년 6개월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
 2.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임용권자의 임기만료일까지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
 3. 제21조의3제4항제6호에 따라 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활동 보좌를 받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지방자치법」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사직, 퇴직 또는 자격상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
 4. 그 밖의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5년(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기간으로, 제21조의3제4항제6호에 따라 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은 제1항제3호의 기간으로 한다)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등의 근무기간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과 제21조의3제4항제6호에 따라 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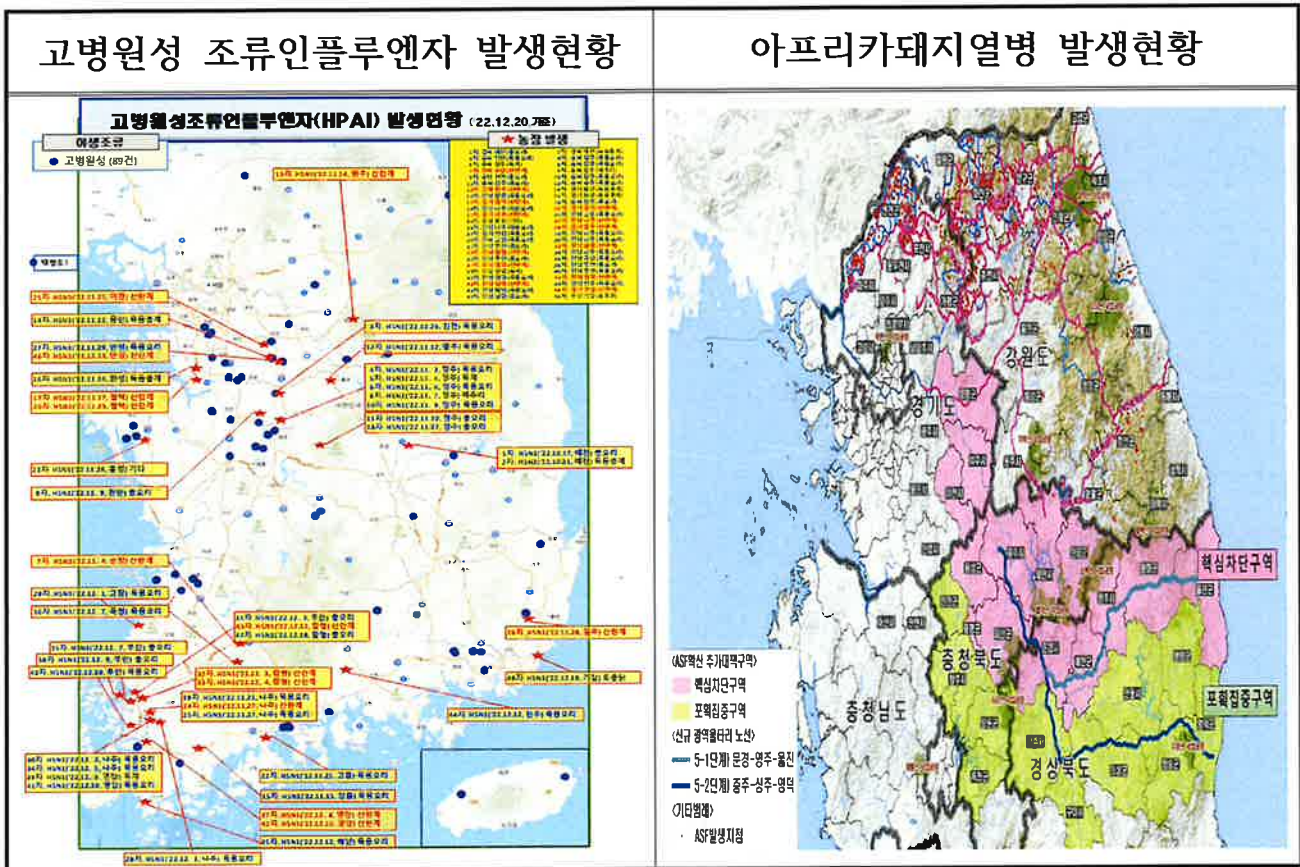
(12월 22일 23:00 기준)

① 가금농장 * 총 52건 : 고병원성 50건, 검사 중 2건

- 관내 가금농장 발생시 살처분 및 매몰 작업 등 실시

② 야생조류 * 총 109건 : 고병원성 92건, 저병원성 6건, 검사 중 11건

-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농가 이동제한 등 방역관리



연번	구분	신고일 (채취일)	시도	시군구	축종	품종	사육수수	혈청형	확진일
1	예찰	10.17.	경북	예천군	오리	종오리	9,519	H5N1	10.19.
2	신고	10.21.	경북	예천군	닭	종계	32,073	H5N1	10.22.
3	신고	10.26.	충북	진천군	오리	육용오리	17,750	H5N1	10.27.
4	예찰	11.3.	충북	청주시	오리	육용오리	12,000	H5N1	11.4.
5	예찰	11.4.	충북	청주시	닭	육계	55,000	H5N1	11.5.
6	예찰	11.4.	충북	청주시	오리	육용오리	13,200	H5N1	11.5.
7	신고	11.4.	전북	순창군	닭	산란계	154,800	H5N1	11.5.
8	예찰	11.7.	충북	청주시	기타	메추리	498,000	H5N1	11.9.
9	신고	11.9.	충남	천안시	오리	종오리	7,686	H5N1	11.10.

연번	구분	신고일 (체취일)	시도	시군구	축종	품종	사육수수	혈청형	확진일
10	예찰	11.9.	충북	청주시	오리	육용오리	22,300	H5N1	11.10.
11	신고	11.10.	충북	청주시	오리	종오리	4,300	H5N1	11.11.
12	신고	11.12.	충북	충주시	오리	육용오리	7,280	H5N1	11.13.
13	신고	11.14.	강원	원주시	닭	산란계	66,730	H5N1	11.15.
14	신고	11.15.	경기	용인시	닭	종계	41,396	H5N1	11.16.
15	신고	11.15.	전남	장흥군	오리	육용오리	10,710	H5N1	11.16.
16	예찰	11.16.	경기	화성시	닭	육용종계	23,954	H5N1	11.17.
17	신고	11.17.	경기	평택시	닭	산란계	6,266	H5N1	11.18.
18	신고	11.17.	충북	청주시	오리	종오리	8,500	H5N1	11.18.
19	예찰	11.21.	전남	나주시	오리	육용오리	79,800	H5N1	11.23.
20	신고	11.23.	경기	평택시	닭	산란계	34,902	H5N1	11.24.
21	신고	11.25.	경기	이천시	닭	산란계	171,242	H5N1	11.26.
22	예찰	11.25.	전남	고흥군	오리	육용오리	26,000	H5N1	11.27.
23	신고	11.26.	충남	홍성군	기타	관상조	124	H5N1	11.27.
24	신고	11.27.	전남	나주시	닭	산란계	55,000	H5N1	11.29.
25	신고	11.27.	전남	나주시	오리	육용오리	45,000	H5N1	11.29.
26	신고	11.28.	울산	울주군	닭	산란계	64,600	H5N1	11.29.
27	예찰	11.28.	경기	안성시	오리	육용오리	12,457	H5N1	11.30.
28	신고	12.1.	전남	나주시	오리	육용오리	14,000	H5N1	12.2.
29	예찰	12.1.	전북	고창군	오리	육용오리	7,238	H5N1	12.2.
30	신고	12.2.	전남	나주시	오리	육용오리	20,300	H5N1	12.3.
31	신고	12.3.	전남	무안군	오리	종오리	8,000	H5N1	12.4.
32	신고	12.3.	전남	함평군	닭	산란계	400,000	H5N1	12.4.
33	신고	12.4.	전남	함평군	닭	산란계	80,000	H5N1	12.5.
34	신고	12.5.	전남	나주시	오리	육용오리	11,800	H5N1	12.6.
35	신고	12.7.	전남	무안군	오리	종오리	7,000	H5N1	12.8.
36	예찰	12.7.	전남	곡성군	오리	육용오리	12,500	H5N1	12.9.
37	신고	12.8.	전남	영암군	닭	산란계	91,000	H5N1	12.9.
38	신고	12.9.	전남	무안군	오리	종오리	8,700	H5N1	12.10.
39	예찰	12.9.	전남	영암군	닭	육계	122,000	H5N1	12.11.
40	신고	12.10.	전남	무안군	오리	육용오리	15,700	H5N1	12.12.
41	신고	12.10.	전남	영암군	오리	육용오리	29,000	H5N1	12.12.
42	신고	12.10.	전남	영암군	닭	산란계	39,000	H5N1	12.12.
43	신고	12.12.	전남	함평군	닭	산란계	53,800	H5N1	12.13.
44	신고	12.12.	경남	진주시	오리	육용오리	16,100	H5N1	12.13.
45	신고	12.12.	전남	해남군	오리	육용오리	36,000	H5N1	12.14.
46	예찰	12.13.	경기	안성시	닭	산란계	317,308	H5N1	12.14.
47	신고	12.18.	전남	함평군	오리	종오리	16,000	H5N1	12.19.
48	신고	12.19.	부산	기장군	닭	토종닭	220	H5N1	12.20.
49	신고	12.21.	경북	성주군	닭	산란계	66,000	H5N1	12.22.
50	신고	12.21.	경남	하동군	오리	육용오리	29,500	H5N1	12.22.
51	예찰	12.21.	전남	나주시	오리	육용오리	14,000	검사 중	
52	신고	12.22	전남	곡성군	닭	산란계	53,000	검사 중	
							2,948,755	살처분	

※ 12. 23 현재, 경북 관내 성주, 칠곡 산란계 밀집단지 고병원성 발생으로 살처분 진행중